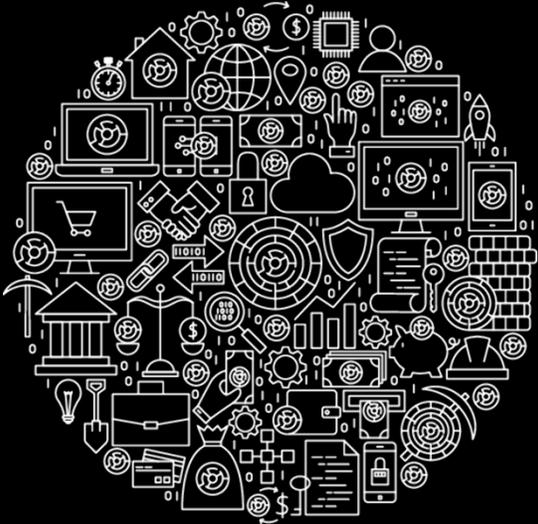


세금계산서 및 관련 문서에 관한 뉴스

세금계산서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제123/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0월



배경

2020년 10월 19일 세금계산서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제123/2020/ND-CP호 시행령 (“제123호 시행령”)은 전자계산서 의무 사용 시점을 공식적으로 **2022년 07월 0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기술 기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경우 제 123 시행령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 문서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본 시행령 전환 규정에 따르면 현재 시점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세무 당국이 기업에 전자계산서 의무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기업이 정보 기술 기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VAT 신고서 및 제123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A, No.03/DL-HDDT의 양식에 따라 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종이 계산서” 및 등록된 전자 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동안 **제119호 시행령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제51/2010/ND-CP호 시행령, 제04/2011/ND-CP호 시행령 및 제32/2011/TT-BTC호 시행 규칙의 지침에 따른 적절한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23호 시행령은 특별한 경우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세무 당국에서 제공하는 종이 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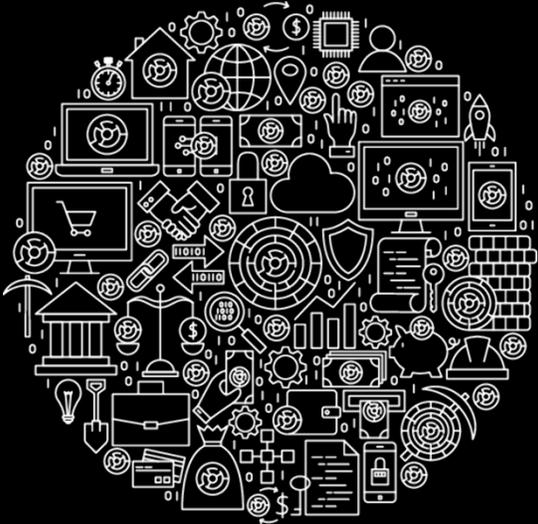
제 123호 시행령은 전자 세금계산서에 관한 2018년 9월 12일 제119호 시행령 및 2019년 9월 30일 제68/2019/TT-BTC호 시행 규칙(제68호 시행 규칙)의 대부분의 지침을 유지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에서 딜로이트 베트남은 제123호 시행령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전환 기간”에 관한 주목할 만한 사항을 요약드리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관련 문서에 관한 뉴스

세금계산서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제123/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0월



1.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 제123호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발행시점이 전자계산서 서명시점과 다른 경우 세금 신고시점은 전자계산서 발행 시점으로 한다.
-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 또는 서비스용역 대가 수취 시점 중 빠른 때로 한다. 회계, 감사, 금융 자문, 가격 평가, 설문조사, 기술 설계, 감독 자문, 건설 투자 프로젝트 자문 서비스를 위한 선급금 또는 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 각 용역 제공 단계별로 물품이 인도 또는 제공되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 서비스의 경우 각각의 인도 또는 제공 시점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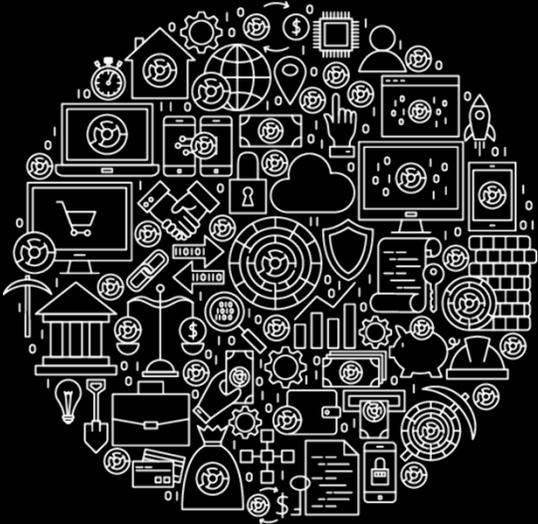
- 대량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항공, 전기, 수도, 텔레비전 서비스, 우편 및 배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물류 서비스, 정보 기술 서비스 분야의 경우 관련 자료 확인에 시간이 필요 할 경우 데이터 확인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서비스가 제공된 다음달 7일 또는 해당 서비스 기간 종료후 7일을 초과 할 수 없다.
-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만 회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소매 사업자 및 식음료 사업자의 전산화된 금전등록기 시스템이 세무서의 데이터 연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각 거래에 대한 청구서는 발행 할 수 있는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금전등록기 시스템 계산서를 합산하여 각 영업일 종료 시점에 발행 할 수 있다.
-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 전자결제를 통한 자금이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일 종료 시점 또는 매월말에 총액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건강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청구서를 인쇄할 수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 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인쇄 된 청구서 정보를 종합하여 영업일 종료시점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 주유 소매의 경우 각 거래별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영업일 종료 시점에 합산 금액에 대해 발행하는 이전 규정과 다름).
- 결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여객 운송(택시)서비스의 경우, 여객 운송 관련 데이터(또는 고객 요청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각 여객 운송 종료 시점에 고객 및 세무 당국에 전송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및 관련 문서에 관한 뉴스

세금계산서 및 관련 문서에 관한 제123/2020/ND-CP호 시행령

202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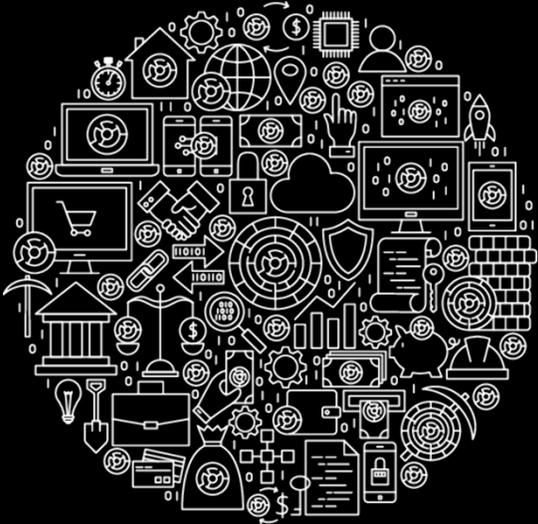


2. 전자 계산서 사용

- 세무 당국의 확인 코드가 있는 전자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전자계산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사용되며, 최초 12개월 사용기간 동안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 i.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 협동 조합, 가구 및 개인
 - ii. 경제단지, 공업 단지, 첨단기술 단지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제외한 인민위원회가 재무부에 요청한 기타 중소기업



- 세무 당국의 확인 코드가 없는 전자계산서(유료 전자 계산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사용): 세무 당국의 확인 코드가 있는 전자계산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경제 단체, 사업 가구 및 개인이 사용한다.
- 세무 당국의 확인코드가 있는 전자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단체에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거래가 발생한 경우; 파산, 유동화로 인해 세금 코드가 종료된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 활동을 중단하였으나 아직 세금코드 종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 또는 경제단체가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일시적 사업중단 통지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경우; 세무 당국이 전자계산서 사용을 중단시킨 기업 및 단체의 경우.
- 세무 당국에서 구매 후 최대 12 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종이 계산서: 세무 당국의 확인 코드가 있는 전자계산서 사용대상으로써 전자계산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전송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시설 및 소프트웨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및 경제단체에 적용된다.



3. 계산서 발행시 오류 처리

- **전자계산서:** 세금코드 또는 계산서 관련 정보(예: 계산서 금액, 세율, 세액, 규격, 상품 품질)에 대한 오류의 경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i. 발행된 전자계산서의 오류 수정, 또는
 - ii. 잘못된 전자계산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자계산서 발행

판매자와 구매자가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잘못된 계산서 수정에 대한 합의 문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 **세무 당국에서 발행한 종이 계산서 :**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달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자 또는 판매자 및 구매자가 세금을 신고한 경우 단순히 수정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잘못 발행된 계산서 수정에 대한 합의 문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4.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 확인을 위한 전자 계산서 정보 조회

- 유관기관은 전자 계산서 내용을 옮긴 문서를 요청하지 않고, 전자 계산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장치를 사용한다.
- 사고 또는 자연 재해로 인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전자 계산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대신에 메시지 형식이 사용 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5. 주목할 만한 기타 사항

- 상품 및 서비스를 대여/반환 할 경우 계산서가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규정에서는 계산서 사용이 요구되지 않음).
-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제3자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 부여에 대한 신규 지침
- 전자 계산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전자 계산서 데이터를 세무 당국에 직접 보낼 수 있는 기업에 관한 소개
- 국가 관리기관, 신용 기관, 전자계산서 서비스 제공 단체를 포함한 기관들에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정보 사용 등록 조건 및 절차 소개 및 안내

제123호 시행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123호 시행령에 의해 폐지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계산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대부분의 조항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속 유효하다. 세금계산서 및 관련 문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계산서 규정에 대한 2010년 5월 4일 제51/2010/ND-CP호 시행령 ("제51호 시행령")
- 제51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2014년 1월 17일 제04/2014/ND-CP호 시행령
- 제51호 시행령에 근거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2011년 3월 13일 제32/2011/TT-BTC호 시행 규칙
- 전자계산서에 대한 2018년 9월 12일 제119호 시행령; 및
- 제119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에 대한 2019년 9월 30일 제68호 시행 규칙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